

## 부록

### 1) 스마트 안전도시 관련 법제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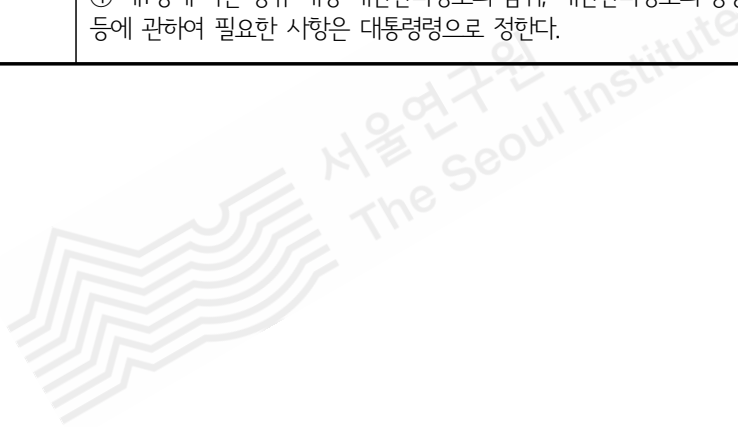
[부록 표 1]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내용

구분	내용
제4조 (책무)	<p>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안전, 복지, 교통, 관광, 환경 등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시민의 실생활 및 공공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.</p>
제5조 (사물인터넷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)	<p>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한다.</p> <p>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물인터넷도시의 기본 추진 방향</li> <li>2.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</li> <li>3.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(시범사업을 포함한다)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li> </ol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「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.</p> <p>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한다.</p>
제7조 (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)	<p>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</li> <li>2. 사물인터넷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</li> <li>3. 사물인터넷도시 브랜드화 추진에 관한 사업</li> <li>4. 사물인터넷플랫폼 기능 고도화에 관한 사업</li> <li>5.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</li> <li>6.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li> </ol>
제8조 (시범사업의 실시 등)	<p>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관내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·재정·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</p>
제11조 (협력체계의 구축)	<p>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, 법인·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·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</p>

[부록 표 2]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과 관련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내용

구분	내용
제18조 (재난안전상황실)	<p>①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·전파, 상황관리,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행정안전부장관: 중앙재난안전상황실</li> <li>2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: 시·도별 및 시·군·구별 재난안전상황실</li> </ol> <p>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·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⑤ 제1항제2호,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,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</p>
제38조의2 (재난예보·경보 체계 구축·운영 등)	<p>제38조의2(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·운영 등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,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 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시·군·구 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⑧ 시·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·군·구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·도 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시·도 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·도지사에게 시·도 종합계획의 보안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⑨ 시·도 종합계획과 시·군·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난 예보·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</li> <li>2. 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종합적인 재난 예보·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</li> </ol>
제74조 (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의 구축·운영)	<p>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p>

구분	내용
	<p>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연계 운영되거나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으며,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
<p>제74조의2 (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)</p>	<p>①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·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되는 재난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재난관리정보의 처리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조기관·긴급구조지원기관 또는 재난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공유 대상 재난관리정보의 범위,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


[부록 표 3]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과 관련된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」 내용

구분	내용
제29조 (재난안전상황실 설치)	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·전파, 상황관리, 재난 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안전상황실(이하 "재난안전상황실"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제30조 (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)	<p>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, 전파</li> <li>2. 위기요인·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</li> <li>3.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</li> <li>4.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</li> <li>5. 소방·교통 등 분야별 재난안전대책본부, 시, 자치구, 공사, 공단의 사건, 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, 시장단 보고 및 홈페이지 게재 등</li> <li>6.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</li> </ol> <p>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</p>
제36조 (재난 예보·경보의 발령 등)	<p>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·경보를 발령하거나 자치구 대책본부장에게 예보·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·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.</p> <p>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·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, 수습본부장, 시 본부장, 자치구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</li> <li>2. 기상상황, 홍수정보, 산불정보,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</li> <li>3.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</li> <li>4.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</li> </ol>
제39조 (재난통계)	<p>① 시장은 국내외 재난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수집된 재난통계정보를 재난관리대책 수립시에 활용하여야 하며, 자치구·긴급구조기관·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.</p>